

제 18 장 협정의 운영

제18.1조 자유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18.1.1에 언급된 당국자 또는 지명자들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하여,
- 가.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적절한 적용을 감독하고,
 - 나. 이 협정의 적용 과정에서 획득된 결과를 평가하고,
 - 다. 부속서 18.1.2.다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창설된 모든 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작업을 감독하고,
 - 라.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위원회에 위임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 마. 공공기업 및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기업과 관련하여, 그리고 제14.8조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상품이나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어떠한 조치도 당사국의 이익에 반해 취하거나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자유무역위원회는,
- 가. 임시 위원회나 상설 위원회, 실무작업반 또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여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업무를 이들에게 할당할 수 있고,
 - 나. 비정부 인이나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 다. 부속서 18.1.3.다에 따라 다음을 변경할 수 있고,
 - (1) 부속서 4의 원산지 규정,
 - (2)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해 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
 - (3) 통일규칙, 그리고
 - (4) 부속서 15.1과 15.2(정부조달), 그리고
 - 라. 그 기능의 행사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자유무역위원회는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제정한다. 자유무역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로 채택된다.

5. 자유무역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정기회의에서는 각 당사국이 교대로 의장을 맡는다.

제18.2조 사무국

1. 각 당사국은 이에 부속서 18.2에 언급된 주무 국가기관을 이 협정 목적상의 사무국으로 지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에 대한 또는 당사국에 의한 모든 의사소통이나 통보는 당해 당사국의 사무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속서 18.1.1
자유무역위원회의 구성원

제18.1조의 목적상, 자유무역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 가. 칠레의 경우, 외교부 장관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들
- 나. 한국의 경우,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들

부속서 18.1.2.다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1. 위원회

- 가. 상품무역위원회
- 나. 위생및식품위생위원회
 - (1) 동물건강소위원회
 - (2) 식물보호소위원회
 - (3) 식품안전소위원회
- 다. 표준관련조치위원회
- 라. 투자및국경간서비스위원회
- 마. 통신표준위원회

2. 실무작업반

- 가. 일시입국 실무작업반
- 나. 정부조달 실무작업반

부속서 18.1.3.다
자유무역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이행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18.1조제3항 다호에 언급된 자유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한다.

가. 칠레의 경우, 칠레공화국 정치헌법 제50조N.1제2항과 합치하는 행정협정에 의한 절차

나.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합치하는 절차

부속서 18.2
사무국

제18.2조의 목적상, 양 당사국의 주무 국가기관은 다음을 말한다.
가. 칠레의 경우, 외교부 국제경제국 또는 그 승계기관
나. 한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또는 그 승계기관